

대전 에테르 스위트 근린생활시설 공급 공고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금액 및 시설용도, 공급 방법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제2025-공동주택과-분양신고-1호(2025.11.18)로 분양신고 필.]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 2021-공동주택과-신축허가-10호 (2021.09.06.)]
- 시행위탁자 : 주식회사 마이다스씨엠
- 시행수탁자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행사 : 주식회사 아이디파트너스
- 시공사 :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 신탁업자(시행수탁자)겸 분양대금 관리자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4-6번지 외 7필지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2,763.80㎡
 - 연면적 : 전체 39,593.6651㎡ 중 근린생활시설 4,644.4410㎡
 -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예정 / 입점예정일 : 2026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규모 : 지하5층 ~ 지상 38층 중 근린생활시설 지상 1~3층
 - 주차대수 : 294대 중 근린생활시설 36대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계획됨
 - 건축물 층별 용도

구 분	용 도
지하 5층 ~ 지하 1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휰룸 등
지상 1층 ~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방재실, 관리사무실, 로비,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실 등
지상 5층 ~ 지상35층	아파트, 오피스텔
지상35층 ~ 지상38층	아파트

■ 내진설계 등급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 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 분	등 급
내진중요도 1	VII-0.224g

■ 근린생활시설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

[단위: m², 호실]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기타공유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1F	101호	37.3760	20.0838	0.9138	16.0969	74.4705	5.4302
		102호	37.3760	20.0838	0.9138	16.0969	74.4705	5.4302
		103호	35.9480	19.3164	0.8789	15.4819	71.6253	5.2227
		104호	34.7200	18.6566	0.8489	14.9531	69.1785	5.0443
		105호	39.4880	21.2186	0.9655	17.0065	78.6786	5.7371
		106호	36.5790	19.6555	0.8944	15.7537	72.8826	5.3144
		107호	37.4010	20.0972	0.9145	16.1077	74.5204	5.4338
		108호	49.3200	26.5018	1.2059	21.2409	98.2686	7.1655
		109호	48.4980	26.0601	1.1858	20.8869	96.6308	7.0461
		110호	40.6500	21.8430	0.9939	17.5070	80.9939	5.9059
		111호	43.3600	23.2992	1.0602	18.6741	86.3935	6.2996
		112호	46.0700	24.7554	1.1264	19.8412	91.7931	6.6933
		113호	43.3600	23.2992	1.0602	18.6741	86.3935	6.2996
		114호	41.2700	22.1762	1.0091	17.7740	82.2292	5.9960
		115호	74.5600	40.0644	1.8230	32.1112	148.5585	10.8325

근린생활시설	1F	116호	31.9500	17.1681	0.7812	13.7601	63.6594	4.6419
		117호	27.4500	14.7501	0.6712	11.8221	54.6933	3.9881
		118호	37.8000	20.3116	0.9242	16.2795	75.3154	5.4918
		119호	37.8000	20.3116	0.9242	16.2795	75.3154	5.4918
	2F	201호	76.2730	40.9848	1.8649	32.8489	151.9716	11.0814
		202호	59.7700	32.1170	1.4614	25.7415	119.0899	8.6837
		203호	59.7700	32.1170	1.4614	25.7415	119.0899	8.6837
		204호	68.1100	36.5985	1.6653	29.3333	135.7071	9.8954
		205호	66.7200	35.8516	1.6313	28.7347	132.9376	9.6935
		206호	66.7200	35.8516	1.6313	28.7347	132.9376	9.6935
		207호	108.8100	58.4684	2.6604	46.8618	216.8006	15.8086
		208호	48.8400	26.2439	1.1941	21.0342	97.3122	7.0958
		209호	50.1600	26.9532	1.2264	21.6027	99.9423	7.2875
		210호	58.0650	31.2009	1.4197	25.0072	115.6928	8.4360
		211호	58.0650	31.2009	1.4197	25.0072	115.6928	8.4360
		212호	63.9900	34.3846	1.5646	27.5589	127.4981	9.2969
		213호	78.4400	42.1493	1.9179	33.7822	156.2893	11.3962
		214호	94.4200	50.7360	2.3086	40.6644	188.1290	13.7179
		215호	74.8200	40.2041	1.8294	32.2232	149.0766	10.8703
	3F	301호	76.2730	40.9848	1.8649	32.8489	151.9716	11.0814
		302호	119.5400	64.2341	2.9228	51.4830	238.1798	17.3675
		303호	109.1150	58.6323	2.6679	46.9932	217.4083	15.8529
		304호	74.1700	39.8548	1.8135	31.9432	147.7815	10.7759
		305호	74.8200	40.2041	1.8294	32.2232	149.0766	10.8703
		306호	63.1300	33.9225	1.5435	27.1886	125.7846	9.1719

■ 분양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원]

구 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 + 31日	입점시
근린생활시설	1F	101호	127,479,357	275,936,331	27,593,633	431,009,321	43,100,932	172,403,729	215,504,661
		102호	127,479,357	275,936,331	27,593,633	431,009,321	43,100,932	172,403,729	215,504,661
		103호	122,608,838	265,393,815	26,539,381	414,542,034	41,454,203	165,816,814	207,271,017
		104호	207,235,813	448,573,723	44,857,372	700,666,908	70,066,691	280,266,763	350,333,454
		105호	202,024,221	437,292,935	43,729,294	683,046,450	68,304,645	273,218,580	341,523,225
		106호	187,141,511	405,078,461	40,507,846	632,727,818	63,272,782	253,091,127	316,363,909
		107호	191,346,938	414,181,348	41,418,135	646,946,421	64,694,642	258,778,568	323,473,211
		108호	252,325,633	546,173,206	54,617,321	853,116,160	85,311,616	341,246,464	426,558,080
		109호	289,473,574	626,582,039	62,658,204	978,713,817	97,871,382	391,485,527	489,356,908
		110호	242,630,640	525,187,841	52,518,784	820,337,264	82,033,726	328,134,906	410,168,632
		111호	240,319,872	520,186,052	52,018,605	812,524,528	81,252,453	325,009,811	406,262,264
		112호	255,339,864	552,697,680	55,269,768	863,307,312	86,330,731	345,322,925	431,653,656
		113호	240,319,872	520,186,052	52,018,605	812,524,528	81,252,453	325,009,811	406,262,264
		114호	228,736,188	495,112,508	49,511,251	773,359,947	77,335,995	309,343,979	386,679,973
		115호	445,031,747	963,296,566	96,329,657	1,504,657,969	150,465,797	601,863,187	752,328,984
		116호	108,972,749	235,877,723	23,587,772	368,438,244	36,843,824	147,375,298	184,219,122
		117호	93,624,475	202,655,508	20,265,551	316,545,534	31,654,553	126,618,213	158,272,767
		118호	128,925,506	279,066,602	27,906,660	435,898,768	43,589,877	174,359,507	217,949,384
		119호	128,925,506	279,066,602	27,906,660	435,898,768	43,589,877	174,359,507	217,949,384
	2F	201호	107,535,474	232,766,660	23,276,666	363,578,800	36,357,880	145,431,520	181,789,400

		202호	140,447,150	304,005,857	30,400,586	474,853,593	47,485,359	189,941,437	237,426,797
		203호	140,447,150	304,005,857	30,400,586	474,853,593	47,485,359	189,941,437	237,426,797
		204호	160,044,427	346,425,279	34,642,528	541,112,234	54,111,223	216,444,894	270,556,117
		205호	156,778,214	339,355,375	33,935,538	530,069,127	53,006,913	212,027,651	265,034,564
		206호	156,778,214	339,355,375	33,935,538	530,069,127	53,006,913	212,027,651	265,034,564
		207호	332,385,323	719,466,965	71,946,696	1,123,798,984	112,379,898	449,519,594	561,899,492
		208호	137,716,690	298,095,621	29,809,562	465,621,874	46,562,187	186,248,749	232,810,937
		209호	141,438,763	306,152,259	30,615,226	478,206,249	47,820,625	191,282,499	239,103,124
		210호	163,728,903	354,400,537	35,440,054	553,569,494	55,356,949	221,427,798	276,784,747
		211호	163,728,903	354,400,537	35,440,054	553,569,494	55,356,949	221,427,798	276,784,747
		212호	180,435,934	390,563,857	39,056,386	610,056,177	61,005,618	244,022,471	305,028,089
		213호	239,613,131	518,656,270	51,865,627	810,135,027	81,013,503	324,054,011	405,067,514
		214호	177,493,993	384,195,858	38,419,586	600,109,436	60,010,944	240,043,775	300,054,718
		215호	140,649,233	304,443,276	30,444,328	475,536,836	47,553,684	190,214,734	237,768,418
	3F	301호	97,889,566	211,887,541	21,188,754	330,965,861	33,096,586	132,386,345	165,482,931
		302호	255,698,144	553,473,197	55,347,320	864,518,660	86,451,866	345,807,464	432,259,330
		303호	233,398,887	505,205,186	50,520,519	789,124,591	78,912,459	315,649,836	394,562,295
		304호	126,920,738	274,727,168	27,472,717	429,120,623	42,912,062	171,648,249	214,560,311
		305호	96,024,770	207,851,085	20,785,109	324,660,964	32,466,096	129,864,386	162,330,482
		306호	81,021,702	175,376,090	17,537,609	273,935,401	27,393,540	109,574,160	136,967,700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지정일)에 무통장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 납부기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 영업일로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2항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잔금은 입점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공통사항

-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m²) × 0.03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타입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및 부대시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및 세대별로 지하주차장, 건축설비실, 부대시설에 대한 금액은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실별 면적은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면적 및 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금액(m²당 공급금액의 단가 기준)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대지지분은 실별 및 세대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지공급 당시의 면적을 안분하여 배분 하였습니다.
- 기둥이 있는 호실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호실별 설계도서는 홍보관 내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각 설치주차대수 면적을 각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하였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점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입점지정일 만료일 이전에 입점 시 잔금 및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하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점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일 이후의 상가관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의 해태 및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사 및 시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행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 환급에 대한 부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실별 공급 금액이 다르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위탁자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전매 시 양도인, 양수인이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음)

■ 점포별 시설용도

용도		권장 용도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의원, 치과의원, 사무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일반 음식점 등(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관련법령 및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부시설은 용도별 바닥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관련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II	청약자격, 청약방법 및 공급일정
----	-------------------

■ 청약 신청 자격

- 최초 분양광고일(2025.11.2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개 호실 청약 가능합니다.(동일인이 2개 호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일정

청약기간	청약장소	당첨자발표 / 장소	계약기간	청약금 환불기간
2025. 12. 01(월요일) 10:00 ~ 16:00	대전 에테르 스위첸 홍보관 (대전 서구 도산로 360)	대전 에테르 스위첸 홍보관 2025.12.02(화요일) 10:00	2025.12.02(화요일) 10:00 ~ 16:00	당첨자 계약일로부터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14영업일 이후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경쟁 발생 시 공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일정

- 청약 일정 : 2025. 12. 01(월) 10:00 ~ 16:00
- 청약 신청금액 : ₩10,000,000원(일금 일천만원)
- 청약 신청금 입금 시 청약호실 및 청약자 성함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지상1층 101호 홍길동 청약시 → "101홍길동" 입금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청약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수납방법
₩10,000,000원 (일금 일천만원)	신한은행	100-035-730774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무통장입금(층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 ex) 지상1층 101호 홍길동 → 101홍길동

- 근린생활시설 청약금은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 시 청약금 납입 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일괄 환불조치 됩니다.

■ 청약신청 방법

- 분양홍보관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사항
본인 신청시	1.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 비치) 2. 본인도장 또는 서명 3.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4. 청약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 명의)
법인 신청시	1.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 비치) 2.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청약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 6.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분양홍보관 내 비치) 1통 2.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 위임용) 및 청약자의 인감도장 3. 대리 신청자의 인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분양홍보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금 환불 방법

- 환불대상 : 청약 신청자 전체 (당첨여부 관계없음)
- 환불기간 : 당첨자 계약일로부터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14영업일 이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 청약금 환불은 금품분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 시 제출한 청약자 본인(법인)명의로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수 있으며, 청약시 제출하신 계좌가 환불불가 및 압류계좌 등에 의한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의 청약금은 전체 일괄 환불될 예정이며, 계약금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환불시 청약금에 대한 경과이자 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25.12.02. (화요일) 10:00**
- 추첨 및 발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60 1층 (대전 에테르 스위첸 분양홍보관)
- 당첨자선정 : 공개 추첨하여 당첨자 선정
- 당첨자 확인은 홍보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으로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시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25.12.02(화요일) 10:00 ~ 16:00**
- 계약체결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60 1층 (대전 에테르 스위첸 분양홍보관)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용도 :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법인 신청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용도 :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계약자 무통장 입금증 •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분양홍보관 내 비치) 1통 2.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 위임용) 및 청약자의 인감도장 3. 대리 신청자의 인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 제출)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 하시길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co.kr>,우체국,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100-035-730774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신한은행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홍보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양홍보관 수납 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건축물 분양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 조경식재 시설물 계획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와 공동주택, 오피스텔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예정(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점예정일 : 2026년 01월 예정(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중도금 및 미도래한 잔금을 실 입점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조성사업의 지연, 공사 중 천재지변(전염병 발생 등),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주)마이다스씨엠 와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마이다스씨엠 가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마이다스씨엠 입니다.
-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입점지연에 대한 책임의무 등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주)마이다스씨엠 가 부담합니다.
-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마이다스씨엠 와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신한자산신탁(주)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마이다스씨엠 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인 신한자산신탁(주) 명의의 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주)마이다스씨엠 와 (주)케이씨씨건설이 부담하며, 계약자(수분양자)는 신한자산신탁(주)에게 일체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분양받은자 및 양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에 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분양사업자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의무양도, 양수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양도,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점유자를 포함한다)은 “분양받은 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본 계약 및 분양 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분양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승계로서는 분양사업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항의 분양권 전매는 분양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신청 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분양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개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는 분양사업자의 사전승인 및 요청하는 서류에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배석하여 기명날인한 후 양도,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 권리양도(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항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 이전 및 승계로서는 분양사업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Ⅲ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사항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별도의 정산은 없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입점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입점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의 입점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호실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홍보관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결과에 따라 입점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점지정기간 만료일(실입점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점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 에 대해서는 입점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입점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에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마감재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결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홍보물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최종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렛 및 카달로그 등 분양 홍보용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도로, 철도,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에 설치된 단지 내, 외부의 옹벽 및 시설물 등은 일부 도면과 현황 레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여 제작하였으며, 본 공사시 실제 현황에 맞추어 실시설계 및 최종 시공될 예정입니다.
--	---

■ 설계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 입점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분양 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허가승인(변경)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시행사에 위임합니다. •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 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케이씨씨건설 현장별 특화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주차 게이트,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는 외부로 노출되어 옥외에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덕트는 외부로 노출되어 옥상까지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입점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건축허가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분양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점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운영실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주차장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사항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 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실시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도로 선형변경,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통합용으로, 지상1층 1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단지 주변 레벨에 맞추어 근린생활시설의 바닥 레벨 및 도어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전체에 방범용 셔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의 위치 계폐방향, 규격, 형태(전열교환기, 및 주방배기덕트 등)는 실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점포공간 내 급탕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상가에서 호별 배수구가 1개소 설치되며, 수도계량기 입주자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전열교환기 및 주방배기덕트 호수당 개별설치(직배기)되며, 외부 창호 또는 벽체에 환기 그릴이 설치 됩니다. → 식당 등 냄새가 발생하는 점포는 인접점포와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탈취기를 설치하여 합니다. • 도시가스배관은 점포 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입점 후 계약자 부담으로 관할 도시가스시설 시공면허업체를 통해 가스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 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업체 (대전도시가스 1666-00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층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조업공간이 배치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 코아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점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전기용량은 각 점포당 100VA/m²(전용면적기준)로 계획되어 있으며, 증설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 후 추가 전기사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분양자(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배치	• 근린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 단지 내 방재실 등은 통합운영(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하1층에 구성되어 있고, 무인 차량통제 차단기(정산포함)가 설치 운영되며, 운영방법 등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함

		니다. -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승강기는 2대가 설치되며, 승강기#1 지하1층~지상3층, 승강기#2 지상1층~지상3층으로 운행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101호~103호는 바닥 단차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내부에 계단 또는 턱이 설치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근린생활시설 104호, 105호, 106호, 115호 전면에 소방활동을 위한 연력송구가 설치됨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2~3층에는 별도 외부간판 설치를 위한 전기배선이 없음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294대로 아파트용 179대, 오피스텔용 79대, 근린생활시설용 36대로 계획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내부 색채디자인은 케이씨씨건설 스위첸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유효 높이 2.7m, 지하1층 주차통로 유효높이 2.7m, 지하 2층~ 5층 주차통로 유효높이 2.3m 주차공간 전체 높이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유도 시스템은 CCTV카메라를 이용한 권역별 주차가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 주차진입 램프 지붕은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 설치되며, 계약자는 추가 연장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IV 기타사항

■ 감리자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V.A.T 포함)
건축	(주)아이팝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957,000,000
토목		
기계		
전기	동양건설턴트(주)	96,250,000
통신		54,230,000
소방		458,920,000

■ 사업관계자

구분	수탁사	위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이다스씨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아이디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32, 6층(개포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33-9 602호 (나성동_NS타워 1차)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110111-4341999	110111-0607618	164711-01043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061(2008.03.04.)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 소유권 이전 형태 : 잔금완납시 개별등기

■ **분양홍보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60 1층

■ **분양문의** : ☎ 042)825-5525

※ 본 분양광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